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다급) 채용 공고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는 아래와 같이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국립외교원장

---

1. 채용 개요

임용직종 및 직위	담당업무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부서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다급)	붙임 직무기술서 참고	1명	계약체결일(`26.12월중) ~ 정년(무기계약직)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2008.12.31. 이전 출생자) 공고일(2026.10.21.) 기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다음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4.12.31.>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 자격요건	
자격 요건	•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자로서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변호사, 노무사(1), 공인회계사(1) 자격증 소지자 - ( )는 자격증 소지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자 * 해당 분야 : 교육학, 국제관계, 사회과학, 어문학 분야 ※ 응시자격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 요건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2년 이내 영어 어학능력점수 보유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TOEFL(IBT), TOEIC, FLEX, NEW TEPS (점수/등급별 차등배점)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행정/공공기관,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해당 분야 : 교육학, 국제관계, 사회과학, 어문학 분야

【 가점 사항 】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

※ 응시요건 관련 고려사항

-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6.11.4.(수)) 기준으로 판단**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26.11.4.(수))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사항은 각 전형단계 모두 적용(전형단계별 만점의 3%)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기(또는 졸업증명서)에 전공분야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학위논문 표지·목차·서론(사본) 등으로 추가 증빙 필요(해외 학위의 경우 별도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요청 가능)
- **어학능력성적**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TOEFL, TOEIC FLEX, NEW TEPS 성적에 대해 차등 배점하며, 복수의 성적 보유시 가장 높은 성적 1개만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 등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시험 등은 불인정
  - 증빙 가능한 점수만 인정하며, 해당자는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 제출 필수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26.10.21(수)~ 26.11.4(수)		26.10.21(수)~ 26.11.4(수)		(발표일) 26.11.10(화)		26.11.12(목)		(발표일) 26.11.20(금)

가.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5배수 초과)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중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 기준)**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① 직무 연관성 ② 기대성과 및 조직 기여 가능성, ③ 자기소개서(내용의 충실성), ④ 우대요건(공인 영어성적(차등배점), 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차등배점)), ⑤ 가점(사회평정요건 해당 여부)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기관명 또는 부서명 오기, 문항 간 답변 불일치시 감점 가능

○ 소극적 서류전형(5배수 이하 적격자 전원 통과)

- 5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 처리
- 요건에 맞는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일부 서류 누락시 탈락 처리

○ **(서류 기재시 유의사항)**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감점 가능

*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을 준용하여 아래 5개 평정요소*를 상(10점)·중(6점)·하(2점)로 계량화하여 평정

* 5개 평정요소 : ①근로자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전형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심사결과 최고 득점자가 복수일 경우,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공무직(연구원 다급)	1명	2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2배수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6.10.21.(수) ~ '26.11.4.(수)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기간	'26.10.21.(수) ~ '26.11.4.(수) 24:00	E-mail 접수 (forlantra@mofa.go.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6.11.10.(화)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예정)
면접전형	'26.11.12.(목)	-
최종합격자 발표일	'26.11.20.(금)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예정)
채용 예정일	'26.12월 중(협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외교부·국립외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기간 : '26.10.21.(수) ~ '26.11.4.(수) 24:00

○ 원서접수 방법 : 외국어교육과 채용담당자(forlantra@mofa.go.kr)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일(11.4.(수)) 24:00 접수분까지 인정

※ 제출 서류(서명본)는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하며, 메일 제목은 **'외국어교육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지원_응시자 성명'으로** 표기

나. 응시자 제출서류(붙임 양식 사용)

1 **응시원서 1부**(필수)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기재

2 **이력서 1부**(필수)

3 **자기소개서 1부**(필수)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간접적으로 출신지역, 학교명, 가족 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해당사항 기재시 감점을 받을 수 있음

4 응시자격 관련 학위기(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필수)

※ 학위기(또는 졸업증명서)에 전공분야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학위논문 표지 · 목차 · 서론(사본) 등으로 추가 증빙 필요 (해외 학위의 경우 별도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요청 가능)

5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필수)

※ 동의서별 **자필 서명** 필요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6 우대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경력 증명서 및 공인영어성적

※ 학사학위 소지 응시자는 응시자격 경력이 아닌 우대 경력임을 필수 기재

7 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근무조건 등

○ 근로형태 : 공무직 근로자

○ 보 수 : 월 2,400,000원 (세전 기준, 4대 보험 가입)
※수당(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월~금, 09:00 ~ 18:00 근무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 근무장소 :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서울시 서초구 소재)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외교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등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 청구 가능

- 다만, 이번 채용의 경우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되어 해당되지 않음.

○ 채용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예정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규정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예정

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영어권 외 해외 학위, 기타 증명서 등은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기한('26.11.4.(수) 24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2-3415-5614)에게 문의. 끝.

직무기술서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다급)

채용예정기관명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선발예정인원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서울시 서초구)	1명

주요 업무	■ 부내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국외연수 및 어학능력검정 업무 지원 ■ 기타 외국어교육과 행정업무 등

필요 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전문성, 분석력, 전략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력

필요 지식	○ 교육학, 국제관계, 사회과학, 어문학 분야 관련 지식 ○ 영어 능력 ○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한 행정 처리 절차에 관한 지식

응시 자격	
자격요건	•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자로서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변호사, 노무사(1), 공인회계사(1) 자격증 소지자 - ( )는 자격증 소지 후 (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해당 분야 : 교육학, 국제관계, 사회과학, 어문학 분야 ※ 응시자격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행정/공공기관,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 근무 경력* * 해당 분야 : 교육학, 국제관계, 사회과학, 어문학 분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2년 이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 중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 - TOEFL(IBT), TOEIC, FLEX, NEW TEPS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다급)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국립외교원장 귀하

※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성명	(한글)
응시직종 (응시분야)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다급)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우)		
전자우편			
전화(자택)		휴대전화	

응 시 표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채용시험)

※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응시직종 (응시분야)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다급)
성명	(한글)	(한자)	
2026 년 월 일 **국립외교원장**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부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면접)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안내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제출시 적색 표기 부분은 삭제					
응시 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직종 및 직위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다급)	성명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지원 자격 여부	☐ 석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 ※ 해당 지원 체크 및 작성 ☐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해당분야:)				
우대 사항 여부	☐ 응시자격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관련분야:) ※ 해당 여부 체크 및 작성 ☐ 공인영어성적				
사회 평정	해당 여부	관련법률	발급처		

나. 응시자격 ※ 해당사항만 작성(항목은 추가 및 삭제 가능)			
학력	전공	학위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시작일~종료일 모두 기재)		직위, 담당업무 등은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

다. 우대사항 ※ 해당사항만 작성(항목은 추가 및 삭제 가능)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만 기재

영어성적	시험명	응시일시 (년월일)	유효기간 (년월일)	성적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력서 상의 기재내용은 필요할 경우 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하되, 글씨크기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요망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 기 소 개 서

【 작성요령 】

①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②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성격의 장·단점,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검정색)

④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

20 .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불분명할 경우 경력 불인정 가능)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12.3.5	'15.2.4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부처	외교부
생년월일	. . .	직종 및 직위	공무직 (연구원 다급)

본인은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외교부가 **실시하는 경력, 학위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국립외교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외교부에서는 공무직 연구원 채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 논문・연구실적 등	근로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법무부 국적과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학위, 경력, 논문・연구실적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국립외교원장 귀하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이내)	[ ]해당 [ ]비해당
4-3. 「부패방지권익위법」(2016.3.29. 제14145호) 시행(20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국립외교원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20 년 외교부 국립외교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결정의 취소 또는 채용의 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4.12.31.>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국립외교원장 귀하